

【 주간포커스 】

미국의 P2P 금융규제 논의와 전망

김동겸 선임연구원

P2P 여신은 온라인상으로 개인의 자금 수요와 자금 공급을 직접 중개함으로써 대출을 발생시키는 형태이다. 미국의 경우 P2P 여신시장은 금융위기 여파로 신용경색, 금융기관의 대출기준 강화 등에 따라 자금난을 겪게 된 개인이 이를 통한 자금 수요를 늘렸고 이와 더불어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의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급성장하였다. 최근 발효된 미국의 금융개혁법안에서는 투자자보호와 자본시장 규제 개선에 P2P 여신업에 대한 규제 논의를 담고 있다. 향후 연방회계감사원이 P2P 여신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데, 동 보고서 내용이 투자자 보호와 더불어 소비자 후생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P2P 여신(Peer-to-Peer Lending)은 개인과 개인이 일정한 조건에 맞춰 직접 자금을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대출을 발생시키는 형태임.¹⁾

- 미국 Prosper社의 경우 자금 수요자가 제시한 금액과 최대이자율에 대해 자금 제공자간 역경매(reverse-auction)로 대출조건이 결정되는 반면, 영국의 Zopa社의 경우 자금 제공자가 대출조건을 결정
- P2P 중개회사는 온라인상으로 개인의 자금 수요와 공급을 직접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금 수요자와 제공자의 이용건수 및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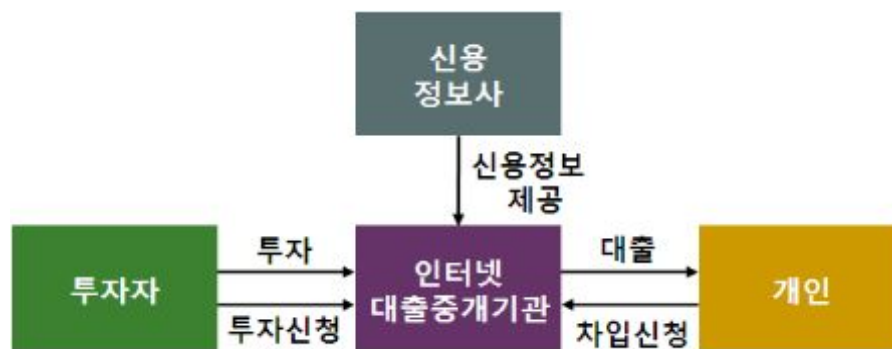
□ P2P 여신은 은행을 통한 자금중개와 비교해 볼 때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다양한 장점을 보유

- 기존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온라인 매체(online platform)를 이용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온라인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매방식을 활용함으로써 대출과정이 투명함.

1) 2005년 영국에서 Zopa가 세계최초로 P2P 대출중개를 개시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2006년에 Prosper社의 진출이후 현재 Lending Club, YadYap, Kudols, MicroVentures 등이 영업 중임.

- 기존 금융회사의 경우 다수의 지점망 확보와 이에 대한 유지비용과 더불어 감독당국에서 요구하는 자본금 및 자금준비금을 확보해야 함.
- o 자금 제공자는 P2P 시장을 활용할 경우 주식시장이나 은행예금 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으며, 자금 수요자는 은행 보다 낮은 금리로 차입이 가능
- 미국의 경우 신용카드를 통한 대출금리가 14%를 초과하나 P2P 여신업체를 활용한 대출금리는 평균 11.9%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²⁾.

<그림 1> P2P 대출의 흐름도



자료: 산은경제연구소(2007), 인터넷을 이용한 개인간 대출중개 서비스

- P2P 여신시장은 금융위기의 여파로 신용경색, 금융기관의 대출기준 강화에 따라 자금난을 겪게 된 개인이 이에 대한 자금 수요를 늘렸고,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의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급성장

- o 영국의 경우 2005년과 2009년 사이 연평균 80.9% 성장
- o 미국의 경우 Prosper社와 Lending Club社의 대출 규모는 총 3.9억 달러(2010년 기준)에 달함.

- P2P 여신시장이 급성장을 하자 미국 증권감독위원회(SEC)는 P2P 여신업에 대해 규제와 감독을 시작³⁾

- o SEC는 Prosper社가 투자자에게 발행한 투자증서를 유가증권의 한 형태로 판단하여 증권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SEC에 대해 사업등록을 의무화⁴⁾⁵⁾

2) AEI(2010), Peer-to-Peer Lending: Innovative Access to Credit and the Consequences of Dodd-Frank

3) Cease-and-Desist Order(2008), Securities Act of 1933 Release No.8984, 94 SEC Docket 1913

4) 한편, 영국의 경우 P2P 여신업체의 경우 금융당국의 규제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며, 여신업체를 통한 차입자의 투자는 예금(deposit)으로 인정되지 않아 예금보험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5) 또한 미등록된 상품의 판매로 집단소송 위험에 처한 Prosper社와 Lending Club社의 경우 각각 2008년 10월과 4월부터 신규

- 2010년 7월 미국의 금융개혁법안(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이 발효되었는데 동 법안에 다음과 같은 P2P 여신업에 대한 규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Dodd-Frank 법안의 989F(a) (1)에 따르면, 2011년 7월 21일까지 현행 P2P 여신시장의 규제 체계, 감독 책임, 개인정보 보호, 리스크 관리 등의 문제를 다룬 보고서를 연방회계감사원(GAO)이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
 - 동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연방회계감사원은 연방은행(FRB), 증권거래위원회(SEC), 소비자단체, 외부전문가, P2P 여신업계의 자문을 구하도록 명시
 - 한편, 미국 금융개혁법안에 의거하여 금융소비자 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이 신설됨에 따라, P2P 여신업에 대한 감독이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으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⁶⁾.
- 이에 따라 연방회계감사원이 P2P 여신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데, 동 방안에 투자자 보호와 더불어 소비자 후생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
 - P2P 여신시장을 통해 자금 수요자에 대한 자본 공급이 확대되고 자금 공급자의 경쟁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소비자 후생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새롭게 도입될 규제 방안이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간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투자자 손실을 보호해야 하나 이로 인해 P2P 여신업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동 보고서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 KiRi

여신 취급이 중단되었고, 이후 강화된 등록기준 충족과 SEC의 감독에 편입되는 것을 조건으로 2009년부터 영업을 재개됨.

6) Prosper Prospectus, supra note3, at 9, 36-39